기 안 용 지

분류기호 문서번호	도정415-	(전화번호)	전결규정 조 항 전결사항
처리기간		구 청 장	
시행일자			
보존년한			
보기조관	건설관리국장 / 도시정비과장 / 도시계획계장	협	고시안심사 / 총무과장 / 기획감사계장
기안책임자	김서구		
경유 수신 참조	구안참조	고시제 호	통제
제목	도시계획시설(시장) 지정승인		

제1안 내 부 결 재

1. 도정415-31 (79. 2. 6)와 관련입니다

2. 관내 장안동 147의 6필이 서고시제56호(79. 2. 6)로 도시계획시설(시장)결정 되었으므로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도계 150-603 (77. 4. 18)에 의거 지적승인코저 합니다.

가. 도시계획시설(시장) 지적승인조서

구분	시장명	위치	면적	비고
신설	장안동시장	장안동 147일대	340평	

제2안 고 시 안

서고시제 호

1. 서고시제56호(79. 2. 6)로 도시계획시설(시장)결정된 장안동 147의 6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건설부고시 제41호(77. 3. 16)의 규정에 의하여

원본대조필 월 일

차본은 원본과 동일함을 증명함 도시정비과장

정서 / 관인 / 발송

이를 고시한다

2. 관계도서는 동대문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

가. 도시계획시설(시장) 지적승인 조서
(내부결재와 동일)

1979. 2.

서울특별시장

제3안

수신: 수신처 참조

제목: 동 건

1. 서고시 제56호(79. 2. 6)로 도시계획시설(시장) 결정된 장안동 147의 6필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보고합니다

첨부 1. 고시문사본 1부
2. 관계도면 1식

수신처: 건설부장관(도시계획과장) 서울특별시장(도시계획1과장)

※ 건설부장관 송부 공문은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발송

제4안

수신: 수신처 참조

제목: 관보게재의뢰

1. 다음과 같이 관보게재 의뢰합니다

가. 게재구분: 고시

나. 게재명: 도시계획시설(시장) 지적승인

다. 법적근거: 도시계획법 제13조

첨부: 고시문 사본 1부

수신처 : 총무처장관, 서울특별시장 (분 : 공보실장)
지) 총무처장관 송부공문은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발송

제5호

수신 : 서울특별시장
참조 : 시민국장
제목 : 관인날인의뢰

1. 당구관내 도시계획시설(시장) 지정승인처리를 위하여 별첨보고 및 의뢰서에 관인날인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. 1. 건설부장관 송부공문.
2. 총무처장관 〃.

제6호

수신 : 산업과장
제목 : 동건

1. 관내 장안동 147외 6필 (장안시장)이 서고시제56호 (71. 2. 6)로 도시계획시설(시장) 결정되어 별첨과 같이 지정승인되었기에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첨부. 1. 고시문사본 1부
2. 관계도면 1부

제7호

수신 : 장안동시장 Co.
제목 : 동건

1. 귀하께서 도시계획시설(시장) 결정요청하신 장안동 147외 6필은 서고시제56호 (71. 2. 6)로 결정되어 별첨과 같이 지정승인되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첨부. 1. 고시문사본 1부
2. 한계도면 1장. 끝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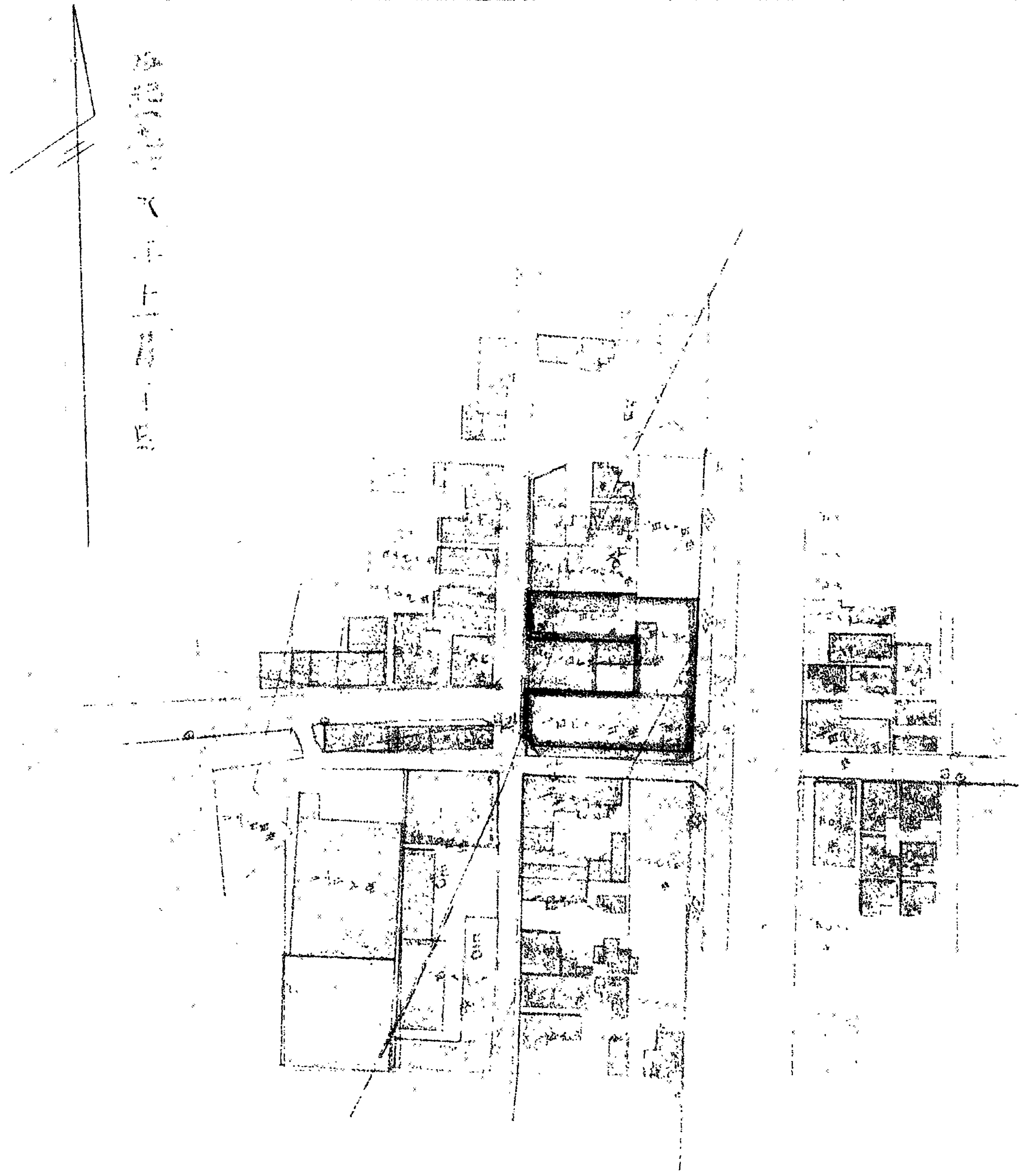
서울시 동대문구 (답십리동 [illegible] 66, 71호 장안동 [illegible] 11, 12, 14, 15, 21. 호 [illegible] 현황측량도.